

#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화, 전임화, 정규직화를 이루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구인, 구직 활성화 및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여 국민의 소방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며 사업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구인,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제도, 정책연구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법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여 본회의 모든 수입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회원 중 평생회비를 낸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4.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탈퇴와 동시에 납부한 회비와 기부한 금품, 토지, 재산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으로 한다.
2.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한다.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5. 정회원으로 회비 완납의 의사가 없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때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

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발기인과 회원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년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사업 관련 활동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주무관청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수 없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성 명	주 소(도로명)	날 인
성용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2, 102-2604	
공정석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1길 12-5, 1층 102호	
이태돈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45, 402호(연산동, 원하우스)	
이병근	경북 경주시 경주역세권1로 신경주더페스트데시앙 202동 2103호	
김경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 대림e편한 아파트 103동 1602호	
이신득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111-2101	

[별지 1호]

기 본 재 산 목 록

(2025년도)

재산구분 (지목별)	수 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0원	
【합 계】		0원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